제4관 특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제2-10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2-11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2-11조 해약환급금

-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 산은 <부표1-1>"보험금 등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5관 기타사항

제2-12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부표2-1

보험금 지급기준표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희귀질환자 산정특례대상 보장급여금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희 귀질환자 산정특례대상"으로 신규 등록되는 경우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00%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부 터 1년 미만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약보험가입 금액의 50%"를 지급함)	

- ※ 1년 미만 :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의 전날까지
- 주) 1.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특약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이 특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이 특약은 그때부터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2. 희귀질환자 산정특례대상 재등록은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표2-2 의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별첨2 [표 105] 참조

경증이상치매보장특약 (무배당,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약 관 목 차

제1편 일반사항

[특약 약관] 제1편 일반사항 참조

제2편 개별사항

제1관 용어의 정의 등

제2-1조 특약의 보장개시

제2-1조의2 "경증이상치매상태"의 정의 및 최종 진단확정

제2-1조의3 "중등도이상치매상태"의 정의 및 최종 진단확정

제2-1조의4 보장계약 등의 정의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2-2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2-5조 사고증명서

제2-6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제2-7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제3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2-8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제2-8조의2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대한 특칙

제2-9조 특약의 소멸

제2-9조의2 "특약의 무효"에 대한 특칙

제4관 특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제2-10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제2-11조 해약환급금

제5관 보험금 대리청구에 관한 사항

제2-12조 적용대상

제2-13조 보험금 대리청구인의 지정

제2-14조 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제2-15조 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2-16조 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제6관 기타사항

제2-17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부표2-1] 보험금 지급기준표

경증이상치매보장특약 (무배당,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 ※ 이 특약은 계약자의 선택에 의해 해당 보험료를 납입함으로써 보장이 가능합니다.
- ※ 이 특약은 제2-1조의4(보장계약 등의 정의)에서 정한 총2개의 보장계약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특약보험기간 중 보험금이 지급된 보장계약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소멸된 보 장계약을 제외한 나머지 보장계약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 ※ 계약자가 가입한 보험종목에 따라 특약 명칭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 일반형의 경우: "(무배당,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부분이 "(무배당)"으로 변경됩니다.

제1편 일반사항

[특약 약관] 제1편 일반사항 제1-1조부터 제1-13조까지를 이 특약 "제1편 일반사항"으로 합니다.

※ [특약 약관] "제1편 일반사항"의 위치는 목차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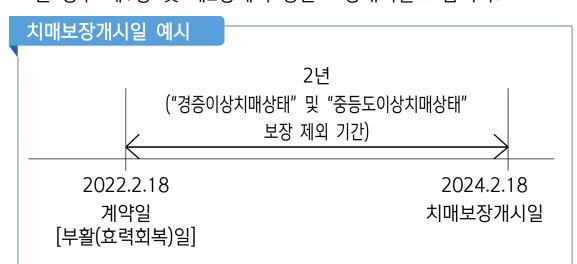
제2편 개별사항

제1관 용어의 정의 등

제2-1조 특약의 보장개시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특약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3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및 제2-8조의2["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대한 특칙]에 따라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치매보장개시일은 제2-1조의2("경증이상 치매상태"의 정의 및 최종 진단확정) 및 제2-1조의3("중등도이상치매상 태"의 정의 및 최종 진단확정)에서 정한 "경증이상치매상태" 및 "중등

도이상치매상태"의 보장이 개시되는 날로,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질병이 없는 상태에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제2-1조의 2("경증이상치매상태"의 정의 및 최종 진단확정) 제2항 및 제2-1조의 3("중등도이상치매상태"의 정의 및 최종 진단확정) 제2항에서 정한 "경 증이상의 인지기능의 장애" 또는 "중등도이상의 인지기능 장애"가 진단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다만, 질병이 없는 상태에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경증이상의 인지기능의 장애" 또는 "중등도이상의 인지 기능 장애"가 진단된 경우 제2-1조(특약의 보장개시)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고 계약자가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 회사가 정하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해지된 계약을 다시 되살리는 일

제2-1조의2 "경증이상치매상태"의 정의 및 최종 진단확정

- ① 이 계약에 있어서 "경증이상치매상태"라 함은 피보험자가 계약일 이후에 발생한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경증이상의 인지기능의 장애"로 진단되고, 그 상태가 진단 시점으로부터 90일 이상 계속되어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로 최종 진단확정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경증이상의 인지기능의 장애"라 함은 CDR척도(한국판 Expa

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2001년) 검사결과가 1점 이상(다만, 이와 동등하다고 국내 의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방법을 사용하여 이와 동등한 정도로 판정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해당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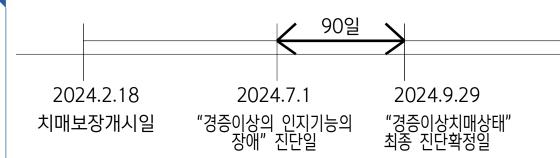
CDR척도

"CDR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2001년)" 는 치매관련 전문의가 실시하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사회기능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로서 전체점수구성은 0, 0.5, 1, 2, 3, 4, 5의 7등급으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重症)을 의미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증이상치매상태"와 "경증이상의 인지기능의 장애" 진단은 의료기관의 치매 전문의(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의사)의 진단서에 의하고, 이 진단은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신체진찰과 신경계진찰, 신경심리검사, 일상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영상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환 감별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정해지며, 뇌영상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증이상의 인지기능의 장애" 진단일부터 90일이 지난 이후에 피보험자의 "경증이상의 인지기능의 장애"가 계속 지속되었음을 진단함으로써 제1항에서 정한 "경증이상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 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그 진단일부터 90일이 지나기 전이라도 "경증이상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 될 수 있습니다.

"경증이상치매상태"의 최종 진단확정 예시



다만, 피보험자가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그 진단일부터 90일이 지나기 전이라도 "경증이상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 될 수 있습니다.

뇌영상검사 예시

[전산화단층촬영(CT)]

Computed Tomography. 정밀도가 높은 X선으로 인체를 360도 방향에서 전체 투사하여 나온 데이터를 컴퓨터로 조합하여 인체의 단면 영상을 그려내는 촬영기술

[자기공명영상(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자기공명영상을 이용하여 생체의 장기나 조직, 병터를 단층상 등의 화상으로 표시하여 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화상 검사법

- ④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신분열병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 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및 "알코올중독",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는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를 원인으로 발생한 "경증이상치매상태"는 보장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⑤ 회사는 제3항에서 치매상태의 조사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치매의 진단을 위해 실시한 검사결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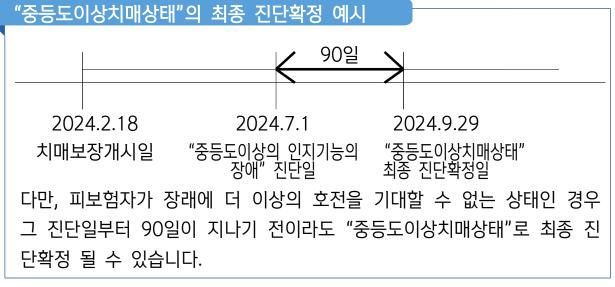
제2-1조의3 "중등도이상치매상태"의 정의 및 최종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중등도이상치매상태"라 함은 피보험자가 계약일 이후에 발생한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등도이상의 인지기능의 장애"로 진단되고, 그 상태가 진단 시점으로부터 90일 이상 계속되어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로 최종 진

단확정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중등도이상의 인지기능의 장애"라 함은 CDR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2001년) 검사결과가 2점이상(다만, 이와 동등하다고 국내 의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방법을 사용하여 이와 동등한 정도로 판정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해당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중등도이상치매상태"와 "중등도이상의 인지기능의 장애" 진단은 의료기관의 치매 전문의(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 문의 자격증을 가진 의사)의 진단서에 의하고, 이 진단은 병력청취, 인 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신체진찰과 신경계진찰, 신경심리검사, 일상 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영상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 환 감별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정해지며, 뇌영상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등도이상의 인지기능의 장애" 진단일부터 90일이 지난 이후에 피보험자의 "중등도이상의 인지기능의 장애"가 계속 지속되었음을 진단함으로써 제1항에서 정한 "중등도이상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 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인경우 그 진단일부터 90일이 지나기 전이라도 "중등도이상치매상태"로최종 진단확정 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신분열병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

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및 "알코올중독", "의사의 처방에 의 하지 않는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를 원인으로 발생한 "중등도이상치매상태"는 보장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⑤ 회사는 제3항에서 치매상태의 조사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치매의 진단을 위해 실시한 검사결과 제출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제2-1조의4 보장계약 등의 정의

이 특약은 다음에 정하는 "경증이상치매 보장계약" 및 "중등도이상치매 보 장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계약자는 각 보장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여야 하 며, 각 보장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별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각 보장계약을 합하여 "특약"이라 합니다)

- 1. 경증이상치매 보장계약: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제2-2조(보험 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경증이상치매진단급여금을 보장받기 위한 계약
- 2. 중등도이상치매 보장계약: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제2-2조(보 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중등도이상치매진단급여금을 보장받기 위한 계약
- ※ 각 보장계약별 보장내용, 유지, 감액 등이 다르므로 각 조항을 꼭 확 인하시기 바랍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2-2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각 보장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부표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 급합니다.

[경증이상치매 보장계약]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경증이상치매상 태"로 최종 진단확정 되었을 때 : 경증이상치매진단급여금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중등도이상치매 보장계약]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등도이상치매상 태"로 최종 진단확정 되었을 때 : 중등도이상치매진단급여금 (다만, 최 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제2-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특약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이 특약 의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 제가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는 특약"에 의해 납입면제가 된 경우 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는 특약"의 약관에서 정한 바를 따르며, 이 특 약이 해당 약관의 「보험료납입면제대상계약」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보 험료 납입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 ② 재해는 특약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하며, 특약보험기간 중 발생 한 재해가 아닌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중 해당 재해와 관련한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아래 제3항~제5항은 경증이상치매 보장계약에 한합니다」

- ③ 제2-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증이상치매진단급여금은 "경증이상의 인지기능의 장애" 진단일부터 90일이 지난 이후에 "경증이상치매상태" 로 최종 진단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 자가 장래에 더 이상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그 진단일부 터 90일이 지나기 전이라도 "경증이상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되면 경증이상치매진단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④ 특약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진단된 "경증이상의 인지기능 의 장애"가 그 진단일부터 90일이 경과하는 기간 중 특약보험기간이 만료되어 "경증이상치매상태"의 최종 진단확정이 특약보험기간 이후에 되는 경우 최종 진단확정시 제2-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증이상치 매진단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⑤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경증이상치매상태"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하여 제2-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증이 상치매진단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경

증이상의 인지기능의 장애"가 진단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아래 제6항~제8항은 중등도이상치매 보장계약에 한합니다]

- ⑥ 제2-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중등도이상치매진단급여금은 "중등도이상치 상의 인지기능의 장애" 진단일부터 90일이 지난 이후에 "중등도이상치 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장래에 더 이상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그 진단일부터 90일이 지나기 전이라도 "중등도이상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되면 중등도이상치매진단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① 특약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진단된 "중등도이상의 인지기 능의 장애"가 그 진단일부터 90일이 경과하는 기간 중 특약보험기간이 만료되어 "중등도이상치매상태"의 최종 진단확정이 특약보험기간 이후에 되는 경우 최종 진단확정시 제2-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중등도이 상치매진단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⑧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중등도이상치매상태"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하여 제2-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중등도이상치매진단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중등도이상의 인지기능의 장애"가 진단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⑨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과 관계없이 지급금은 제5항 및 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에 따라 지급합니다.
- ⑩ 제5항, 제8항 및 제2-9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특약보험기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